

2026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2차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수출바우처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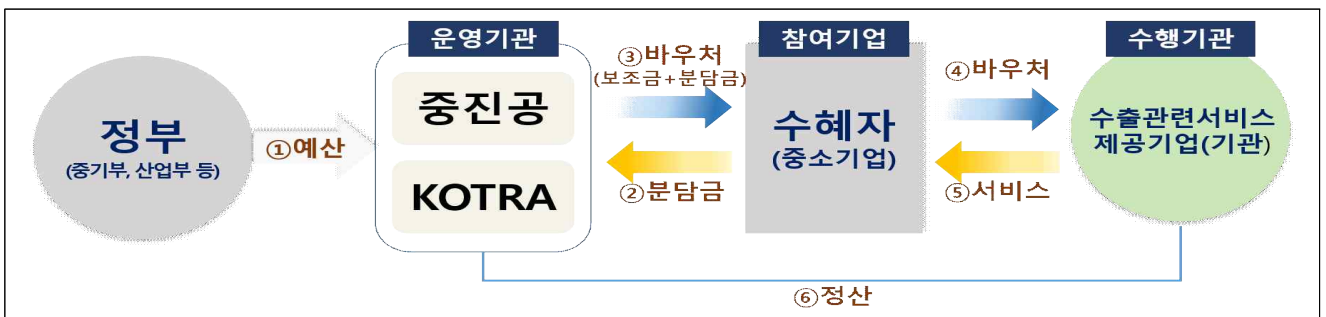
□ 사업 목적

- 중동 상황 및 글로벌 관세 정책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및 성장동력 확보
-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게 디자인 개발, 홍보·광고, 바이어 발굴 등 15개 분야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사업 내용

-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에 다양한 수출 서비스 (마케팅, 디자인, 인증, 전시회 참가, 지적권 획득 등)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
-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온라인 쿠폰으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중소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수출바우처 발급 및 정산 흐름도>



※ 운영기관이 바우처 총액(①국고+②기업부담금)을 재원으로 참여기업(선정기업)에 ③바우처(가상의 쿠폰)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에서 비교, 선택하여 ④수행계약 체결 및 ⑤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⑥소요비용 정산

□ (신청기간) '26. 4. 17(금) ~ '26. 5. 6(수) 17시까지

※ 신청 마감일 접속량 증가에 따른 신청 지연(불가) 가능성이 있어, 조기신청 권장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
- *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는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 * 인증서 발급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2. 모집개요 및 일반사항

□ 모집규모 : 000개사 내외

□ 사용기간 : 2026. 3. 1 ~ 2026. 12. 31.(10개월)

* 사용기간 내 이용분에 한해 정산가능

(단, 전시회의 경우 2027년 1월 31일까지 개최하는 건에 대해서 정산 가능)

□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규모 : 기업의 '25년 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화

지원트랙	지원 대상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내수기업	전년도 수출액 '1,000불 미만'	30백만원	50~70% * 최근결산 매출액 규모 따라 차등 적용	
	튼튼한 내수기업*	45백만원		
수출초보	전년도 수출액 '1,000불~10만불 미만'	30백만원	매출액	보조율
수출유망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45백만원	100억원 미만	70%
수출성장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70백만원	100~300억원 미만	60%
수출강소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100백만원	300억원 이상	50%

* 튼튼한 내수기업: 내수단계 선정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을 별도 선정하여 지원한도 우대

□ 운영방향

○ 추경예산 반영 및 신속지원 체계 도입

→ 신청 마감부터 선정까지 1개월 이내 선정(현장평가를 생략한 패스트트랙 방식)

○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 확대

구분	주요 변동사항	세부내용
해외규격 인증	중간정산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획득에 장기간 소요되는 인증에 한해 비용 증빙이 가능할 경우, 인증 획득 전이라도 선금 지원 가능
국제운송	지원항목 확대 및 한도확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 기존 운임 중심 → 위기 대응형 물류비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상샘플 운송비 신규지원 ② 종합물류대행(풀필먼트) ③ 해외 창고 임대료 지원 ④ 선적전 검사비용 등 ▶ 기본 지원한도 60백만원 유지 ▶ 물류바우처 연계 시 최대 75백만원까지 이용가능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 ◆ 중기부 수출바우처를 포함하여 각 부처 및 지방정부 등이 운영 중인 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26.3.1일 기준)

* 예시 : 산업부(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농식품부(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해수부(수산식품기업바우처), 지방정부(KOTRA 지역본부 연계 진행형 사업) 등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

- 단, 특정 수출서비스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개별사업(지사화사업, OK FTA, 인증취득, 박람회 등) 중복신청 가능하나 선정 이후 각 사업간 동일 유사 항목으로 중복정산 금지

- ◆ 최근 2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중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

구분	바우처 사용률	제재사항
'24.3.1일 이후 수출바우처사업 선정기업	70%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70%이상 ~ 85%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85%이상	■ 제재 없음

- ◆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 ◆ '26년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특수관계기업의 정의]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정의) 제22호, 제23호에 따름

[예] A기업과 B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A기업 대표자의 가족 등이 운영하는 B기업 등 (자세한 사항은 관리지침을 참고 요망)

※ 동일사업장 등 사실상 동일기업으로 의심되는 경우, 실질적인 경영의 독립성(주주현황, 임차관계, 인력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협약기간 내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는 참여 불가
 - * 단, 재무제표상 상품 매출이 100%인 경우, 제조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필수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수출bauer사업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지원트랙 ※ 중동 피해기업 또는 일반 수출기업으로 구분하여 신청

1 중동 피해기업(우선선정)

[실적 인정 중동 21개국]

- ① 아랍에미리트, ② 카타르, ③ 오만, ④ 바레인, ⑤ 쿠웨이트, ⑥ 사우디아라비아, ⑦ 요르단, ⑧ 이란, ⑨ 이라크, ⑩ 레바논, ⑪ 팔레스타인, ⑫ 시리아, ⑬ 이스라엘, ⑭ 예멘, ⑮ 리비아, ⑯ 모로코, ⑰ 수단, ⑱ 알제리, ⑲ 이집트, ⑳ 튀니지, ㉑ 모리타니

- (신청대상) 최근 3년('23.1~'26.3) 중동 지역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 (별도증빙 제출불요)

② 일반 수출기업

- (신청대상) 중동지역 외 수출기업 및 수출 예비기업

□ (공통) 신청서류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구분	연번	서식명	내용
공통	①	사업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홈페이지에서 작성
	③	사업계획서	바우처 활용계획 작성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 사용자 메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 첨부
	⑤	'24-'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25년 결산 미완료기업은 '23-'24년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⑦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
선택 (희망시)	⑧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⑨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수출계약서 사본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⑩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 없을 시 제출 * 외화입금증명서 필수기재 : 신청인, 송금인, 일자, 금액(실적기준은 '25년 입금 기준)
	⑪	지점 수출 합산 희망시	- 직수출 : 무역통계진흥원 혹은 무역협회의 실적증명 - 간접수출 : KTNET에서 발급한 간접수출 실적증명원 - 그 외 수출 : 신청 서류 ⑧,⑨,⑩

< 서류 제출 안내 >

- **(①~②) 사업신청서, 신용조회·정보제공 동의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③) 사업계획서**: 첨부 "서식 3" 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수출 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 **(④~⑥) 민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간편 제출
 -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 각종 민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⑧~⑩) 수출실적 추가 인증 서류**
 - * 실적 증빙 종류에 따른 발급기관의 공식 서류만 인정
- **(⑪) 지점 수출 합산** : 합산 희망 시, 신청 시스템상 관련 서류 업로드 필요

※ **중동 피해기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일반 수출기업으로 전환하여 평가**

□ (공통)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안내

- 수출바우처 사업은 직수출 및 간접수출, 서비스수출, 외국인도수출 등을 동일하게 인정받아 수출단계 설정이 가능
 - 단, 기타수출(제출 시)은 기업의 희망 시에만 합산

- **직수출 (상품 및 재화 수출실적)** : 관세청 수출 통관실적을 통해 운영기관에서 조회 예정 (별도 증빙 불요)
- **간접수출** : KNET 간접수출 실적증명을 통해 운영기관에서 조회 예정 (별도 증빙 불요)
 - 단,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조회 예정으로 간접실적인정을 위한 대금입금 증명 등이 완료되어 조회 값으로 추출되어야 함
- **기타수출**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외국인도수출, 서비스 수출
 - 실적 증빙 종류에 따른 발급기관의 공식서류 제출 시만 인정
- **참고** :
 - ① 법인등기부등본 상 지점·지사로 등록된 경우, **지점의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시 실적 합산 가능**(직수출, 간접수출 등, P. 6~7 신청기업 제출 서류 참조)
 - ② **목록통관 수출실적 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수출증명(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서류 별도 제출 필요**

□ (공통) 지원한도 우대 기업

○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중 정책적 우대 필요 및 성과 우수기업 대상으로, 바우처 추가 지원한도 부여 등 지원 우대

① (물류분야, 물류바우처 연계) 물류 애로 해소 필요 기업 중 희망 기업을 선별하여 물류 바우처 연계지원

- 한도 추가된 물류 바우처는 국제운송 메뉴판에 한정하여, 사용가능 (지원한도 총 1,500만원, 보조율 70%)

※ 연계 시, 국제운송 최대 이용한도 확대(60백만원 → 75백만원)

* 단, 26년도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에서 물류 관련 지원한도 우대를 1회 이상 받은 기업은 제외

[물류 바우처 한도우대 적용 예시]

※ (예시) A사가 강소단계(정부지원금 한도 100백만원, 보조율 50% 가정) 선정

- ▶ A사는 정부지원금 100백만원 + 자부담금 100백만원 = 일반 바우처 200백만원 발행
- ▶ 물류바우처 연계 희망 → 추가 선정 → 물류바우처 발행 = 정부지원금 10.5백만원 + 자부담금 4.5백만원 = 물류 바우처 15백만원 발행
- ▶ A사는 수출 바우처 215백만원 이용 가능(일반바우처 200백만원 + 물류바우처 15백만원. 단, 국제운송 서비스 분야는 최대 75백만원까지 이용)

② (테크서비스 분야, 테크바우처 연계) 테크서비스 활용 희망기업을 선별하여 테크서비스 수출 바우처 연계지원

- 한도 추가된 테크서비스 수출 바우처는 '테크서비스' 메뉴판에 한정하여, 사용가능(지원한도 총 5,000만원, 보조율 70%)

[테크서비스 바우처 메뉴판]

구분	지원내용	지원방식
클라우드 서비스	■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 비용	사후정산 ※ 서비스 이용후 결과물 검토 거쳐 정산
데이터센터 활용	■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기료, 트래픽 비용 등 전산자원 활용 비용(해외 현지소재의 데이터센터 이용에 한함)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및 모바일 지원	■ 국가별 문화, 환경, 언어를 고려한 인터페이스 재구성, 해외향 모바일 앱 및 웹 개발 비용 등	
기타 서비스	■ 전문가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테크 서비스 수출에 필요한 서비스임을 승인받은 항목	

[테크서비스 바우처 한도우대 적용 예시]

※ (예시) A사가 강소단계(정부지원금 한도 100백만원, 보조율 50% 가정) 선정

- ▶ A사 일반 수출바우처 강소단계 선정(정부지원금 100백만원 + 자부담금 100백만원 = 일반바우처 200백만원 발행)
- ▶ 테크서비스 바우처 연계 희망 → 추가 선정 → 테크서비스 바우처 발행(정부지원금 35백만원 + 자부담금 15백만원 = 테크서비스 바우처 50백만원 발행)
- ▶ A사는 총 바우처 최대 250백만원 이용 가능(일반바우처 200백만원, 테크바우처 50백만원. 테크서비스 분야로만 50백만원까지 이용)

③ (기타 정책 트랙 연계) 정책 목적에 따라 아래 기업군에 대해 별도 한도 우대 적용

- (튼튼한 내수기업) 내수단계 선정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은 튼튼한 내수기업 트랙으로 별도 구분하여, 내수트랙 대비 바우처 지원한도 50% 이내 확대

*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기업, 성능인증기업, TIPS 성공 졸업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 유니콘,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선정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 (수출국 다변화) '25년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중 수출국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은 바우처 지원한도 20% 이내 확대

* (수출국 다변화 성공 기준) '25년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중 '24년 대비 '25년 수출국가 수가 증가한 기업

- (수출 고성장) '25년 수출액이 100만 불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 20% 이상인 기업은 바우처 지원한도 50% 이내 확대

[지원한도 우대 관련 주의사항]

- ◎ 지원한도 우대항목 중 ③의 경우, 1개 항목에 대해서만 우대적용
- ◎ 예산 상황에 따라 우대사항 해당 기업 중 평가점수 등으로 일부만 우대지원 가능(대상자 별도 통보)

□ 수출 바우처 졸업제

- 수출바우처 사업에 1회 이상 참여 가능하나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각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바우처) 합산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23년 지원금(바우처)부터 합산
- 단계별 지원한도(백만원) : (내수) 60, (초보) 60 (유망) 90, (성장) 140

[졸업제 적용 예외]

- ① 강소단계 선정 기업
- ② 수출국 다변화, 수출 고성장, 물류 바우처 활용, 테크서비스 바우처 활용 기업으로 선정되어 바우처 지원한도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정부지원금액은 단계별 지원한도 합산 시 미포함
- ③ 튼튼한 내수기업 선정은 기업당 1회로 한정하며, 튼튼한 내수기업 지정이력이 있는 기업은 내수단계에서 최대 90백만원 발급 한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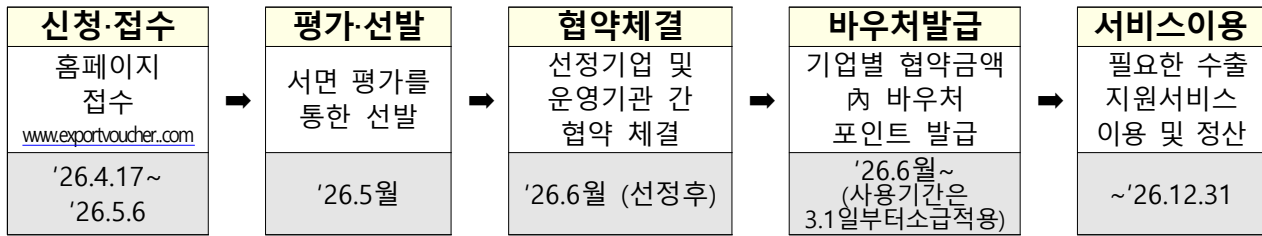
3. 평가 및 사업진행 절차

- 신속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평가를 생략하고, 서면평가로 대체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참여기업을 선발

□ 평가절차

- ① (요건 검토)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 심사
- ② (서면 평가) 수출준비도, 수출비율, 수출실적 성장률 등을 종합하여 서류평가 진행을 통해 최종 대상자 선정
- ※ 동일사업장 등 사실상 동일기업으로 의심되는 경우, 실질적인 경영의 독립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주현황, 임차관계, 인력현황 등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진행 절차



4. 가점사항

- 정책적 지원 필요성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평가시 가점부여

구분	가 점 항 목	가점	비고
1	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또는 벤처기업)	1	증빙서류 필수
2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1	
3	혁신 기술 보유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TIPS 성공 졸업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최근 3년 이내 CES 혁신상 수상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지역 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초광역권 선도기업	1	CES 혁신상 수상기업 한해 증빙서류 필수
4	정책 우대 중소기업 : 명문장수기업, 청년일자리강소기업,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	증빙 불요
5	'25년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 (유효기업)	1	
6	수출품목(전략산업) 영위기업 : ① 정유, 석유화학 제품 제조기업, ② K-뷰티/패션	1	

* 가점은 기업당 최대 6점까지 인정하며, 신청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분에 한해 인정

5. 바우처 서비스 메뉴

○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5개 분야 8,000여개 서비스 등록

< 수출바우처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예시 >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관세대응 패키지	관세피해 대응 관련 서비스	대체시장 발굴, 대체 공급망 확보, 관세 현지 분쟁 해결 등 관세 대응 관련 서비스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해외 진출전략 구축, 해외시장조사, 경쟁사 및 경쟁제품 분석, 소비자 리서치, 해외거래처 조사/발굴/매칭 등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특허/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해외상표, 해외특허 및 실용신안,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 특허/지재권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현지등록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서비스 지원	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진단/분석, 신규 수출 브랜드 런칭, 마케팅/브랜드 전략, 디지털 마케팅 전략, 제품·개발 개선 전략 및 컨설팅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 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국내개최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조사, 법률자문, 해외법인설립, 해외 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GUI,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 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제외)
무역보험·보증	수출관련 보험·보증서비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 가능
2.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 및 부가가치세는 정산 불가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정산가이드 및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이 고지하는 서비스별 표준단가 내에서 정산 가능

6. 유의사항

- 중기부·중진공에서 수행 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방정부, 산업부·코트라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 * 예시) 지방정부 등에서 '개별전시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수출바우처사업' 세부프로그램으로 동일전시회 지원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등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을 부과하며, 향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 동일·유사사업을 활용하여 중복 정산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 수출바우처사업에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
 - * 수출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7조(세부사업 협약의 해지 및 연장)
-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기업분담금 30%이상 미납 시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사전공지 없이 선정 취소
- 바우처 사용률이 85% 미만일 경우 2년간 사업 참여 제한

바우처 사용률	참여제한
70% 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
70% 이상 ~ 85% 미만	■ 5점 감점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85% 이상	■ 제한 없음

* 수출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 수출바우처 정산 시 운영기관 보완요구를 10일 (영업일 기준)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산 불가
 - ※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은 '수행완료' 처리 기한을 고려하여 바우처 사용일정에 유의

□ 동일 법인이라도 한 개의 사업자(사업자번호 기준)만 선정 가능하며, 수출바우처사업에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이 이용한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

* 예시) 법인 본사로 신청 및 선정 → 본사 이용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
지점(혹은 공장)으로 신청 및 선정 → 지점(혹은 공장) 이용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운영기관별 「수출바우처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7. 문 의 처

구 분	전 화
수출바우처 일반 문의	055-752-8580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www.exportvoucher.com)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시스템" 선택 후 작성
중소기업지원플랫폼 (https://m.one-click.co.kr/#/kosmes_export)	02-3771-1050

[별첨] 특수관계기업 정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정의) 제22호 및 제23호

22. “특수관계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 나. 대표자가 단독으로 또는 대표자와 특수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또는 특수이해관계인이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대표자 또는 특수이해관계인이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
- 다. 대표자, 특수이해관계인, 제나목의 자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대표자, 특수이해관계인, 제나목의 자가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

23. “특수이해관계인”이란 대표자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6촌 이내의 혈족, 본인의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